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귀화절차 간소화〉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41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2024. 10. 10.
3. 회 부 일: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종합평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국적법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도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는 현재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있음.

이에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종합평가 면제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u>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u> 2. <u>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 3. <u>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u> 4. <u>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u> ③ <u>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u>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u>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u> 3. <u>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u> 4. <u>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u> ④ <u>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u>
--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¹⁾ 귀화허

가의 종류는 ① 통상적인 기본절차로 진행되는 일반귀화,²⁾ ② 대한민국 국민과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³⁾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인정되는 방식인 특별귀화⁴⁾로 구분됨.

- 1)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 ⑤ (생략)
- 2)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3)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평가⁵⁾와 면접심사⁶⁾를 실시하는바,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구체적으로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미성년자와 만 60세 이상인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종합평가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및 한국 사회 이해 등의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료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의미함.

6) 면접심사는 한국어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기타 기본 소양 요건 등에 대한 요건을 구두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함.

7) 「국적법 시행령」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는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⁸⁾을 이수한 사람 등이 있으며,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등이 있음.¹¹⁾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⁹⁾]

구 분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 면제 대상
종합평가 면제 대상	1. 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초·中等教育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8.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9. 법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자녀로서 법제6조제1항1호 또는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2호 후단 및 3·6·7·9·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규정된 아래 각 목¹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2. 장애 등 청장등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 대상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영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60세 이상인 사람 6.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8)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7. 제7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8.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부 또는 모, 그외 가족 등의 보호나 도움을 받고 있을 것 9.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한 자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귀화를 신청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고 있을 것
--	--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는데,¹²⁾ 특히 농·어촌 기반 지방도시는 저출생·고령

9)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7조 및 제8조

10)가. 지적·정신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적·정신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나. 폐성장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폐성장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11)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8. 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 8. 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12) 2023년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1만 명 감소한 5천133만 명이고,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하였음. 수도권 인구는 2601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명 대비 70만 명 이상 많으며,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 10.) 및 통계청)

* ⁽¹⁹⁾1737명 → ⁽²⁰⁾24만7591명 → ⁽²¹⁾40만7757명 → ⁽²²⁾53만1198명 → ⁽²³⁾70만3201명

화에 따른 구조적 인구감소 및 일자리 공백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21.10월 최초 지정, 5년 단위 지정)

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현행 종합평가의 면제13)에 더하여, 이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13)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35호) 제7조(종합평가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경우 면접심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간이귀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내용임.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간이귀화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인구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를 개정규정에 의해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¹⁴⁾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은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에 최초 지정되어 10년 후인 2031년 10월이 되어서야 개정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적 효과를 바로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14)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심사 중인 자는 이 법 개정규정에 의한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 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한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등에 대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의 면제와 관련한 사항도 함께 법률에 상향하고 있으나, 현행 국적법 체계는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주소, 생계 유지능력 등의 기본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기타 국적취득과 관련한 세부적 요건은 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법률로의 상향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

15) 또한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국적법의 귀화 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에 의존할 경우 국적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